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71
----------	-----

2025. 3. 21.(금)
산 업 경 제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이종갑 의원 등 7인
- 나. 발의일자 : 2025년 3월 4일
- 다. 회부일자 : 2025년 3월 5일
- 라. 상정일자 : 제424회 충청북도의회(임사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5년 3월 13일 상정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종갑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KOICA ODA공모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위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제교류와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조례명 변경(제명안)
- 국제교류협력을 목적과 적용범위에 포함(안 제1조, 제2조)
- 국제개발협력사업 근거와 대상지역 신설(안 제10조)

○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무의 위탁 신설(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가. 발의배경

- 충청북도의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에 관련 사항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함
- 국제개발협력 사업 진행을 위해 신규 조례제정의 방법도 있으나 충청북도가 외국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기에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조례 정비의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체계적이고 단계적 사업 전개를 기대할 수 있음

나. 개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

- 제명안은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이 충청북도 국제교류와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KOICA ODA공모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명을 변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 됨
-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 조항과 적용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과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 안 제3조는 외국 자치단체와의 활발한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신설

된 조항은 타당함

- 안 제10조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근거와 사업추진 대상지역의 범위에 대한 규정으로 충청북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신설된 조항은 타당함
- 안 제11조는 신설 조항으로 도지사가 충청북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위탁과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 업무 위탁에 관해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음

다. 상위법령 등 검토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하는 경우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같은 법 제5조에서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서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과 종류를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사

업의 대상지역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근거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라. 종합의견

- (필요성)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근거 법령의 규정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타당성) 본 조례에서는 근거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개발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법적합성)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종합의견) 기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충청북도의 국제개발 협력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성,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은 적절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 론 요 지 : 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871호
의 결 연 월 일	. . . (제 회)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3월 4일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갑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71
----------	-----

발의연월일 : 2025년 3월 4일

발 의 자 : 이종갑, 김꽃임, 이옥규, 박경숙,
유재목, 이의영, 임병운

1. 개정이유

- 충북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KOICA ODA공모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위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제교류와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조례명 변경(제명안)
- 국제교류협력을 목적과 적용범위에 포함(안 제1조, 제2조)
- 국제개발협력사업 근거와 대상지역 신설(안 제10조)
-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무의 위탁 신설(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2025. 3.
- 협 의 :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
- 비 용 추 계 : 비용추계 제외 사유서 첨부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충청북도와 외국의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를 “충청북도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교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 국제교류협력 증진에”로 한다.

제2조 중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국제교류협력 증진”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 자치단체와의 활발한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중전의 제4조)제1항 중 “충청북도”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도지사는 외국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국제개발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사업추진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공적개발원조 대상국 중 도와 국제교류관계가 있는 지역

2. 해외 재난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의 출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u>	<u>충청북도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충청북도 와 외국의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을 통한 국제교류 업무를 처리 함에 있어</u>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충청북도 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교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 국제교 류협력 증진에</u> --.
제2조(적용범위) <u>외국자치단체와 의 자매결연에</u> 관하여 다른 법 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 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u>국제교류협력 증진</u> ----- ----- ----- --.
<u><신 설></u>	제3조(도지사의 책무) <u>충청북도 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는 외국 자치단체와의 활발한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지역 경쟁 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 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u>
제3조 (생 략)	제4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제4조(자매결연의 제의) ① <u>충청 북도가</u> 외국자치단체에 자매결 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자매결연의 제의) ① <u>충청 북도(이하 “도” 라 한다)</u> ----

해당지역의 각종 자료를 받아
지역여건, 행정규모, 외교적 특
수성 등 자매결연 및 교류의 적
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
다.

②·③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자매결연의 체결) ① 충청
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자치단체와 자매
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
다.

② ~ ⑥ (생략)

제7조·제8조 (생략)

<신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7조(자매결연의 체결) ① 도지
사는 외국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
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제9조 (현행 제7조 및 제8
조와 같음)

제10조(국제개발협력사업) ① 도
지사는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
지증진을 위하여 「국제개발협
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
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추진 대상지역
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공적개발원조 대상국 중 도
와 국제교류관계가 있는 지역
2. 해외 재난재해 지역 중 원조

<신 설>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
고 인정되는 지역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의 출자·
출연기관, 민간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
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
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
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
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관련법령 발췌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4조(기본원칙)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
2. 개발도상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
3.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
4.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5.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

② 국가등은 양자간 개발협력과 다자간 개발협력 간의 연계성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 ④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4조(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 정부는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하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제5조(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 ① 해외긴급구호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괄한다. <개정 2011. 7. 14., 2013. 8. 13.>

1.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
2.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장비의 지원
3. 현금지원
4. 보건의료활동
5. 수송지원
6. 임시 재해복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구호물품·장비가 구호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 사 유

- 본 개정조례안은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명 및 관련 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사유에 해당함.

○ 작성자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장 박유정